

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규정

제정 2013.03.01 1차 개정 2016.07.01
2차 전면개정 2021.02.22 3차 개정 2022.10.04
4차 개정 2023.09.11

제1조(명칭) 본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.)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업, 교육, 학내 활동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하여 담당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본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원칙) 장애학생에게 교육, 수업, 학내 활동 및 진로 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제4조(기능)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.)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 사항 <개정 2023.9.11.>
4.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등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9.11.>
5. 교직원·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<개정 2022.10.4., 2023.9.11.>
6.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<개정 2022.10.4., 2023.9.11.>

제5조(도우미 제도 운영) ①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.

1. 학습 지원 도우미
2. 이동 보조 도우미

②도우미에게는 장학금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편의제공 등) ①센터는 장애학생에게 교육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며,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
2.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<개정 2022.10.4.>
3. 취학편의 지원
4. 정보접근 지원으로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,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및 인공지능 문자통역 서비스, 프레젠테이션 교육자료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. <개정 2022.10.4.>
5. 편의시설 설치 지원

②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.

제7조(실태조사) ①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등 실태조사를 수행하며,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장애학생의 성·연령·장애유형·장애정도별 현황

2. 학교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
3. 장애학생 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
4.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
5. 장애학생 교육 재정의 확보·분배·활용 현황
6. 장애학생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
7. 장애학생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학생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
8.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, 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교육 관련자의 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

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
2.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
3.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
4. 그 밖에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

③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,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(全數調査)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④실태조사는 센터에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의2(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 구축·운영) 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.

제7조의3(인권침해 사건 조사) 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한다.

- ①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②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- ③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대학의 심사청구)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(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)과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.

④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

⑤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⑥대학의 장, 교직원,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⑦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